

영수증수취명세서(1)

※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3쪽 중 제1쪽)

①상 호		②사업자등록번호				-				-				
③성 명		④생년월일												
⑤주 소	(전화번호 :)													
⑥사업장소재지	(전화번호 :)													
⑦업 태			⑧종 목											

1. 세금계산서·계산서·신용카드 등 미사용 내역

⑨구 분	3만원 초과 거래분		
	⑩총 계	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	⑫명세서제출대상(⑩-⑪)
⑬건 수			
⑭금 액			

2. 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

구 분	건 수	금 액	구 분	건 수	금 액
⑮음·면지역소매			⑮부동산구입		
⑮금융·보험용역			⑮주택임대용역		
⑮비거주자와의 거래			⑮택시운송용역		
⑮농어민과의 거래			⑮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		
⑮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과의 거래			⑮항공기항행용역		
⑮비영리법인과의 거래			⑮간주임대료		
⑮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			⑮연체이자지급분		
⑮사업의 양도			⑮송금명세서제출분		
⑮전기통신·방송용역			⑮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		
⑮국외에서의 공급			⑮유료도로 통행료		
⑮공매·경매·수용			⑮합 계		

「소득세법」 제70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에 따라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 고 인 (서명 또는 인)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(관리번호 :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㉔총계란: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으로서 세금계산서·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증빙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2. ㉑명세서제출제외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은 ㉔합계란의 건수 및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, ㉒명세서제출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은 영수증수취명세서(2)의 ㉑일련번호 및 ㉒거래금액란의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.
3. ㉑음·면지역소재란 내지 ㉒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 : 세금계산서·계산서·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3만원 초과 거래분 중 명세서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아래 사유별로 구분·집계하여 적습니다.
 - 가. ㉑음·면지역소재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나. ㉑금융·보험용역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다. ㉑비거주자와의 거래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라. ㉑농어민과의 거래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마. ㉑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거래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8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사유를 적습니다.
 - 바. ㉑비영리법인과의 거래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8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사. ㉑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아. ㉑사업의 양도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1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자. ㉑전기통신·방송용역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차. ㉑국외에서 공급받은 경우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카. ㉑구매·경매·수용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타. ㉑부동산구입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6호 및 제8호(주택임대용역을 제외합니다)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파. ㉑주택임대용역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6호(부동산의 구입을 제외합니다)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하. ㉑택시운송용역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7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거. ㉑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8호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너. ㉑항공기 항행용역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8호의3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더. ㉑간주임대료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8호의4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러. ㉑연체이자 지급분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8호의5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머. ㉑송금명세서 제출분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9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버. ㉒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: 「소득세법」 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1만원 (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)을 초과하는 접대비 해당분을 적습니다(21년 지출분부터는 3만원 초과분).
 - 서. ㉑유료도로 통행료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8호의6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.
4. 영수증수취명세서(2)의 ㉑일련번호란 내지 ㉒비고란 : 명세서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용을 적습니다.

영수증수취명세서(2)

(3쪽 중 제3쪽)

①상 호		②사업자등록번호				-				-				
③성 명		④생 년 월 일												

영수증수취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역

⑤일련번호	⑥거래일자	공 급 자				⑪거래금액	⑫비 고
		⑦상 호	⑧성 명	⑨사 업 장	⑩사업자등록번호		
계							